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을 위한 사업장 조사 신설

- 9월 28일(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의 _ 노동부 자격정책과(02-2110-7285)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고 적발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점을 감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장부를 검토하는 등 자격증 불법대여에 관한 조사의 권한·절차·기준과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간에는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조사권한이 불분명하여 개별부처별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총괄하는 부처와 개별부처의 조사권한이 명시되어 체계적·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불법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전기·환경·소방·농업·산림** 등의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차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를 통해 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을 활성화하여 국가와 민간 자격 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일반적으로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의무도 신설된다.

노동부 인사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것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향후 3년간 동일 종목 응시가 제한된다”면서 “불법대여 조사를 강화하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스스로 불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